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2

March 2,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2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u>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u> 1. 25.	• (이슈) 할부거래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할부수수료를 최고한도를 인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u>친환경 전기차 시장, M&A 증가 및 기업결합 승인 신속화 추세</u> 1. 26.	• (이슈) 전기차 분야 기업결합 심사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M&A를 신속히 심사·승인해왔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 부응과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성 우려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하겠다고 밝힘
<u>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u> 1. 27.	• (이슈) 가맹사업법 입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 1. 27.부터 2022. 3. 8.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u>정보 기술(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u> 1. 27.	• (이슈) IT서비스 분야 관련 간담회 • (주요내용)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개편안 발표 1. 27.	• (이슈) ICT전담팀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 • (주요내용)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
공정위·한국소비자원 SNS 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28.	• (이슈) SNS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 실태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을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 7.	• (이슈)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공정위, C2C 거래 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 관련 해명 2. 7.	• (이슈) 전자상거래법과 C2C 플랫폼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의 뒤늦은 C2C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 부과 유권해석으로 기업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부터 존재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해명
공정위,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해명 2. 10.	• (이슈)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규제 •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지체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낡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 특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해명 2. 14.	• (이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 (주요내용)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해 자료를 누락하기만 하거나 고의성 없는 자료누락까지도 고발하고 있으며 고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2.15.	• (이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16.	• (이슈) 대리점법 입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 2. 16.부터 2022. 3. 28.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이슈	주요 내용
<u>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u> 2. 17.	• (이슈) 하도급분야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
<u>공정위, 숙박업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u> 2. 23.	• (이슈) 플랫폼 사업자(숙박업) 규제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2개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광고계약서 및 계약체결절차 등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냈다고 밝힘
<u>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실태 조사 실시</u> 2. 23.	• (이슈) 디지털시장 중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u>5개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u> 2. 24.	• (이슈) 5개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 (주요내용)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
<u>공정위, 통신장애와 관련한 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관련 해명</u> 2. 24	• (이슈) 통신장애와 관련한 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 (주요내용) 공정위가 분쟁해결기준 상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배상액을 통신3사 약관 수준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
II. 주요 소식	
<u>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친족 범위에 대한 재계 지적</u> 2. 2.	• (이슈)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 (주요내용)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정 자료의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됨
<u>공정위, ‘담합 처벌 제외 리스트’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u> 2. 8.	• (이슈) ‘담합 처벌 제외 리스트’ 개선방안 연구용역 • (주요내용)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적용 제외 및 인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담합 처벌 제외 제도의 보완 및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이슈	주요 내용
<u>과기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우려 의견 전달</u> 2. 8.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 (주요내용)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우려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함
<u>공정위, 골프장 표준 약관 개정 추진</u> 2. 15.	• (이슈) 골프장 표준 약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는 (i) 그늘집·캐디 이용 의무, (ii) 이용료 환불 규정을 개정한 골프장 표준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골프장 약관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u>방통위,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령 심의·의결</u> 2. 16.	• (이슈)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제정 동향 • (주요내용) 방통위는 지난 2월 16일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심의 및 의결함
<u>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착수</u> 2. 22.	• (이슈)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독과점 여부) 판단과 시정조치안 마련 등 2단계로 구분하고, 당사회사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유럽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u>조성욱 공정위원장,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관련 온라인 간담회 참석</u> 2. 24.	• (이슈)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후원하는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
III. 국회 발의법안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국회제출</u> 1. 25.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u> 1. 28.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u> 2. 10.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슈	주요 내용
<u>대리점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u> 2. 10.	• (이슈)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u> 2. 10.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2)

I. 보도자료

1.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2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개정 내용]

•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 (안 제1조의2)

- **(개정배경)** 일부 상조업체들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 폐업·도산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개정내용)**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

• 할부수수료를 최고한도 인하 (안 제5조)

- **(개정배경)**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
- **(개정내용)**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20%로 인하

2. 친환경 전기차 시장, M&A 증가 및 기업결합 승인 신속화 추세 (1. 26.)

- 최근 친환경·저탄소 정책의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 공급시장(상방시장)에서부터 부품 및 완성차 제조시장(하방시장)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 과정에서 M&A가 활발히 전개되어 오는 가운데, 공정위는 전기차 분야의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하고 있다고 밝힘
- 나아가 공정위는 대표적으로 (i) 전기차 제조사가 리튬이온 전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합작을 추진한 사례, (ii) 배터리 공급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소재 업체를 인수한 사례, (iii) 배터리 핵심소재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한 주식취득, 합작을 추진한 사례, (iv) 그 외 해외시장에서 해외업체 간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합작회사를 설립한 사례를 모두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힘
- 공정위는 향후에도 친환경 정책 부응과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성 우려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

승인할 계획임을 밝힘

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27.)

- 공정위는 2022. 7. 5.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 1. 27.부터 2022. 3. 8.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i)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ii)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자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13조의5 제2항 및 제3항)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한 경우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i)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ii) 비용 분담 비율, (iii)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으로 이를 체결하도록 명시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열람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백만원, 2차 7백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차등 규정

4. 정보 기술(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1. 27.)

-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
-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IT서비스 시장에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범 성격인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공정위)과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과기정통부)를 소개하고 위 자율규범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
-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공공 SW 사업 입찰시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과기정통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

5.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1. 27.)

-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
-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i) 디지털독과점*, (ii) 디지털갑을, (iii) 디지털소비자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iv) 디지털국제협력, (v)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
 - * 기존의 ICT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
-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

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

-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기업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
-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디지털국제협력, 디지털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

6. 공정위·한국소비자원 SNS 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28.)

-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개요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 개요 및 결과]

• 공정위의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 **(조사개요)**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소위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판단기준에 따라 부당광고를 점검
- **(조사결과)**
 -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인스타그램 9,538건, 유튜브 99건)으로 나타났으며, 자진시정 건수는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으로 나타남
 -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가 7,330건(35.3%), 표시위치 부적절이 8,056건(38.8%),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14.7%)로 나타남(한 게시물이 여러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 집계)

• 한국소비자원의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

- **(조사개요)** 소비자원은 SNS 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 및 최근 5년간의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하고,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를 통한 구매 관련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상담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대비 5.2배 증가
 - SNS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지만, 맞춤형 광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뒷광고’ 포함)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에 응한 소비자들은 SNS 광고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로 보였고(52%), 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5점 척도 기준* 평균 3.8점)와 정부·공공기관(5점 척도 기준 평균 3.72점)의 적극적인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5점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라 생각

7.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 7.)

-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건의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i)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ii) 분쟁조정 활성화, (iii)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fast track) 마련 등을 건의
 -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i)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ii) 열람·복사 확대, (iii)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건의
 - 그 외에도 (i)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ii)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 건의
- 공정위는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도 보완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힘
 -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 상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fast track)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힘
 -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는 점을 밝히고,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언급

8. 공정위, C2C 거래 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 관련 해명 (2. 7.)

- **(보도내용)** 2022. 2. 7. 국내 한 언론사는 중고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구체화에 불과하다는 공정위의 뒤늦은 유권해석으로 인해 기업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함
- **(해명내용)**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2012. 2. 17. 개정된 전자상거래법(2012. 8. 18. 시행) 제20조에서부터 C2C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뒤늦은 유권해석으로 새롭게 C2C 거래 중개업자를 규제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함

9. 공정위,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해명 (2. 10.)

- **(보도내용)** 2022. 2. 10. 국내 한 언론사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지체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낡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 특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겨냥하여 조사 중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도함
- **(해명내용)**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i)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일인 2021. 3. 5. 이전인 2020년 6월부터 이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ii) 특정 사업자가 아닌 거래 규모가 크고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해명

10.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해명 (2. 14.)

- **(보도내용)** 2022. 2. 14. 국내 한 언론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특수관계인의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동일인(총수)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과도하게 넓어 사실 파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자료제출 누락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
- **(해명내용)**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i) 동일인의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누락하기만 하거나 고의성 없는 자료누락까지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ii) 특수관계인의 자료누락에 대해서는 벌칙조항(공정거래법 제125조)이 있을 뿐, 과태료 부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특수관계인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그룹당 수십억 원의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고, (iii)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 대한 고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

11.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2. 15.)

- 지난 2. 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
- 제정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는 (i)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ii)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2022. 2. 18. 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 이 된다는 내용, (iii)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 (iv)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됨

12.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16.)

- 공정위는 2022. 6. 8.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 2. 16. 부터 2022. 3. 28.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알렸음
 -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i) 시설, (ii) 인력, (iii)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함(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1])
 -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를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i)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ii)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8조의2)

13.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2. 17.)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됨
- 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함

14. 공정위, 숙박업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2. 23.)

- 공정위는 2월 23일 2개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광고계약서 및 계약체결절차 등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냈다고 밝혔으며 공정위가 보도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기재 관련)** (i) 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업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ii) 앱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
 - **(계약서 서명 절차 도입)**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 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거나 개선 계획을 마련케 함
- 공정위는 (i) 위와 같은 자율 개선과 숙박업 분야 디지털 갑을 문제 개선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으며, (ii) 향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iii) 제정안 통과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임을 밝힘

15.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실시 (2. 23.)

- 공정위는 2022. 2. 24.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 거래실태 및 경쟁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에 해당하므로 디지털시장 대응팀의 디지털 독과점 분과 주도로 다음과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림
 - (조사개요) (i)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 (ii)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의 2단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 (조사대상) (i)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인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단계 실태조사 후 (ii)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i)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ii) 심판관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 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점검하여 클라우드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거래구조 및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할 예정
- *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판매하면서, 제3자 소프트웨어도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중(스마트폰의 앱마켓과 유사)

16. 5개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2. 24.)

-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1. 9. 부터 산업별로 학계·업계 및 관련 사업자단체등을 포함한 「시장변화 모니터링그룹」을 구성·운영하여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함
 -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 (i) 수평적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 및 신규진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반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ii) 수직적 측면에서 상·하방 기업간 수직계열구조의 약화가가능성 및 생산·납품구조 변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힘
 - 공정위는 (i) 시장변화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제도·시장관행 개선 및 시장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시장감시 강화와 함께, 시장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상생협력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ii) 개정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힘
- * 독과점 시장구조 통계조사 외에 시장분석 실시 근거 마련(공정거래법 제4조)

17. 공정위, 통신장애와 관련한 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관련 해명 (2. 24.)

- (보도내용) 2022. 2. 24. 국내 한 언론사는 공정위가 분쟁해결기준 상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배상액을 통신3사 약관 수준인 피해시간 또는 일 요금의 6~8배로 개정하려 한다고 보도함

- **(해명내용)**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망서비스업 등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현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배상기준 및 피해배상액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

II. 주요 소식

1.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친족 범위에 대한 재계 지적 (2. 2.)

-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정 자료의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됨. 일각에서는 거래 관계가 없거나 평소 교류가 없어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미한 회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년에 3~4회 정도 대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공시 담당자들이 공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SNS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미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대신 빠른 시정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함

2. 공정위, ‘담합 처벌 제외 리스트’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2. 8.)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적용 제외 및 인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담합 처벌 제외 제도*의 보완 및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 현행 공정거래법은 (i)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ii) 연구·기술개발, (iii) 거래조건의 합리화, (iv)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공정위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3. 과기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우려 의견 전달 (2. 8.)

-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정위가 지난 1월 6일 행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우려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함
- 과기부는 (i) 공정위의 심사지침과 온플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ii) 심사지침은 중개 거래 목적의 플랫폼 외에 검색 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 교환 플랫폼을 포괄하여 규제하나 총매출액이나 판매 금액 등의 기준이 없어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특히 (iii) 공정위가 단독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심사지침 적용 대상자를 ‘과기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4. 공정위, 골프장 표준 약관 개정 추진 (2. 15.)

- 공정위는 (i) 그늘집·캐디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ii) 이용일 임박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불 비율을 규정하도록* 개정한 골프장 표준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골프장 약관 전수조사에 착수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짐
 - * 가령 숙박업 표준약관처럼 계약 당일에 취소하거나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만, 이용일 7일 전엔 90%, 5일 전엔 70%, 3일 전엔 50%만 환불하는 방식
- 다만 현행 골프장 표준 약관상 “평일 이용 3일 전, 주말 이용 4일 전에는 전액 환불 의무”보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표준약관 채택율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5. 방통위,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령 심의·의결 (2. 16.)

- 방통위는 지난 2월 16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은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기로 정함
 - 특히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i)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ii)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iii)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음
 -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

6.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착수 (2. 22.)

- 글로벌 기업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의 제도 차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독과점 여부) 판단과 시정조치안 마련 등 2단계로 구분하고, 당사회사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유럽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M&A 심사법제와의 비교·검토 후 필요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7. 조성욱 공정위원장,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관련 온라인 간담회 참석 (2. 24.)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후원하는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함

- **(정책 추진 여건)** 2021년 대한민국 경제가 내수, 수출에서 성장을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평균 부실 위험이 높아졌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오미크론의 영향이 있어 2022년 대한민국 경제의 대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힘
- **(정책 추진 방향)** 공정위의 2022년 정책 키워드는 (i) 공정한 시장, (ii) 혁신하는 기업, (iii) 주인되는 소비자이며, 주요 정책은 (i)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리 증진, (ii)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 구조 및 거래 질서 정립, (iii)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 환경 조성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음
 - **(디지털 경제)** (i) 플랫폼 사업자의 멀티호밍 제한, 웹툰·웹소설 분야의 저작권 양도 요구, 저작권 분야 경쟁사 진입 차단에 대한 모니터링, (ii) 플랫폼 분야에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자율 상생 협력 도모, (iii) 메타버스 등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지 점검
 - **(지배 구조)** (i) 동일인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ii)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자금보충약정 등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iii)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및 일감 개방 유도, (iv)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 **(거래 환경)** (i) 온라인 어플리케이션·TV 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하도급·대리점 분야 상향식표준계약서, 하도급 분야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보급, (ii) 치킨, 편의점 부분 가맹점들의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iii)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iv)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v)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비율 등에 대한 구체화 작업 진행, (vi)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으로 확대, (vii)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접수 현황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III. 국회 발의법안

1.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국회제출 (1. 25.)

- 정부는 종전에는 공정위에만 부여되었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도록 규정(안 제27조 제1항 및 제3항)하는 일부 개정안 발의

2.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1. 28.)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위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85조의2 신설)하는 일부 개정안 발의

3.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2. 10.)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안 35조의2 제4항 등)하는 일부 개정안 발의

4. 대리점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2. 10.)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안 34조 제4항 등)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

5.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2. 10.)

-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안 제37조의2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